

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

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513호, 2021.03.22.)
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제·개정 이유

기술형입찰 활성화에 맞춰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용대상 및 범위를
명확히 하고 발주청 책임성·청렴성을 보다 강화하는 안전장치 마련

2. 주요 내용

가. 발주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
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(제2조제2항)

나. 발주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
예정인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 확대에 맞춰 자격기준을 완화
(제24조제5항)

다. 내부 평가위원이 조직 또는 상급자 등의 부당한 간섭·내부압력 등과
무관하게 객관적·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
(제35조제7항, 별표 2 제11조)

3. 기타 :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의 법령
정보(훈령·예규·고시) 참조